

도시관리계획(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(변경) 및 제일은행
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20호(2016.07.28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(2026.8.2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(변경), 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상업 및 업무기능과 연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
II.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①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-	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	성동구 행당동, 도선동, 홍익동, 하왕십리동 일대 (왕십리역 주변)	213,006.0	-	213,006.0	서고 제1999-32호 (’99.2.20.)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

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가. 교통시설 : 변경

1) 도로 결정조서 : 변경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대로	2		30~40	주간선 도로	3,305 (52)	서울 운동장	행당 광장	일반 도로	-	-
변경	대로	2		30~40	주간선 도로	3,305 (52)	서울 운동장	행당 광장	일반 도로	-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5	8~10	집산 도로	127	왕십리로	대로 2-58	일반 도로	총고22호 (39.01.19.)	-
변경	소로	2	15	8~10	국지 도로	127	왕십리로	대로 2-58	일반 도로	총고22호 (39.01.19.)	선형 변경

※ 도로 연장에서 ()는 사업대상지 내 연장임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2	대로2	• 선형 변경	• 대로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대로2호선과 소로2-15호선 간 접하는 가각부에 대해 도로폭 현황에 맞추어 선형 조정
소로2-15	소로2-15	• 선형 변경	• 대로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대로2호선과 소로2-15호선 간 접하는 가각부에 대해 도로폭 현황에 맞추어 선형 조정

나. 공간시설 : 변경없음

다. 공공·문화체육시설 : 변경없음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가. 가구 결정조서 : 변경

구분	가구번호	비고	
		기정	변경
일반상업지역	21	대영학원 특별계획가능구역, 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 소방파출소	대영학원 특별계획가능구역, 왕십리 오거리변 특별계획구역 소방파출소

■ 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가구번호	변경사유
-	21	• 특별계획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가구계획 변경

나.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가구번호	면적(㎡)	기정		변경	
		위치	계획내용	위치	계획내용
21	4,629.2	도선동 35	공공청사 (파출소)	도선동 35	공공청사 (파출소)
		도선동 35-2	-	도선동 35-2	-
		도선동 39-2	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	도선동 39-2	왕십리 오거리변 특별계획구역
		도선동 39-1, 40, 41, 42	대영학원 특별계획가능구역	도선동 39-1, 40, 41, 42	대영학원 특별계획가능구역

■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가구번호	변경사유
-	21	• 특별계획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필지계획 변경

2.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4.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가. 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: 신설

구분	항목	세부항목	인센티브 세부기준			비고
			산정식		도입비율	
1순위	녹지 생태 도심	개방형 공간	기준용적률 × [(도입면적 - 의무면적) / 대지면적] × α	α = 0.6	60%	순위 내 택1 가능
		입체 녹지	기준용적률 × [(녹화면적 - 의무면적) / 대지면적] × α	α = 0.6		
2순위	탄소 중립	저영향 개발	기준용적률 × [(도입면적 - 의무면적) / 대지면적] × α	α = 0.4	40%	순위 내 택1 가능
		신재생 에너지	기준용적률 × α	α = 0.04		

항목	구분	산정기준		비고
녹지 생태 도심	개방형 공간 조성	계획사항	주변과 공간적으로 열린 계획 실현시	공개공지 및 공개공간, 공공보행통로, 보차혼용통로 계획시 적용 가능
		적용범위 및 위치	본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또는 그 외 필요시 적정성을 인정받는 경우 제시 가능	
		적용기준	공공보행통로는 폭원 6m 이상 확보하고, 주변과 연속적으로 조성하여 연계할 것 의무면적 ^{주1)} 외 10% 이상 제공	
	입체 녹지 조성	계획사항	효율적인 토지 및 건축물 공간 활용을 위한 입체적인 녹지 확보	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범위 및 조성 위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 제시 포함
		적용범위 및 위치	본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 또는 중심지로서 유동인구 동선 등을 고려하여 접근 편의성,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서 적정성을 인정받는 경우 제시 가능	
		적용기준	의무면적 ^{주1)} 외 10% 이상 제공	
탄소 중립	저영향 개발	계획사항	「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녹지생태 및 물순환 체계 등을 고려	
		적용범위 및 위치	각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시설물 설치	
		적용기준	자연재해 영향 최소화 시설 또는 설계방법 적용시 또는 「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」에 따른 의무생태면적률 외 10% 이상 설치 시	
	신재생 에너지 (지열 등)	계획사항	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상 적용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 이상 확보시	-
		적용범위 및 위치	전 구역내, 각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시설물 설치 가능	
		적용기준	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20% 이상	

※ 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·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」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지역 여건,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스마트 도시, 디자인 혁신, 지역 맞춤형계획 등의 적정 항목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(변경)결정할 수 있음

※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

주1) 의무면적 : 개방형 공간, 입체녹지 조성시 세부항목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최소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면적

4]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

1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구분	구역명	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기정	변경		기정	변경	변경후	
-	제일은행	왕십리 오거리변	성동구 도선동 39-2	1,652.9	-	1,652.9	-

■ 특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변경내용
-	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	성동구 도선동 39-2	• 특별계획구역 명칭 변경

2.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조서 : 변경

가. 계획지침(기정)

구분		계획지침	비고
구역명		• 제일은행 특별계획구역	-
용도지역		• 일반상업지역	-
구역면적		• 1,652.9㎡	-
가구 및 획지		•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한다.	-
건폐율		• 60% 이하	-
용적률	기준	• 600% 이하	-
	허용	• 800% 이하	-
	상한	•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	-
높이제한		• 100m 이하	-
공공시설 제공비율		• 14% 이상	-
건축물의 배치	건축한계선	• 서측 :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• 남측 :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	-
차량 및 보행동선	동선계획	• 간선도로(왕십리로) 및 도로가각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	-

구분		계획지침	비고
건축물 용도	불허	•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(주거복합일 경우 제외)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	-
	권장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일반음식점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	-
	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, 독서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	-

나. 계획지침(변경)

구분		계획지침	비고
구역명		• 왕십리 오거리변 특별계획구역	-
용도지역		• 일반상업지역	-
구역면적		• 1,652.9㎡	-
가구 및 획지		•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한다.	-
건폐율		• 60% 이하	-
용적률	기준	• 800% 이하	-
	허용	• 880% 이하	-
	상한	•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적용	-
높이제한		• 100m 이하 ※단,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1.3배 이내 완화 가능	-
건축물의 배치	건축한계선	• 서측 :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• 남측 : 왕십리로변 도로(기부채납)경계선으로부터 3m	지침도 참조
	벽면한계선	• 서측 :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(1층)	

구분		계획지침	비고	
차량 및 보행동선	동선계획	- 간선도로(왕십리로) 및 도로가각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- 왕십리로 가각부에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	지침도 참조	
건축물 용도	불허	-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[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] - 제1호의 단독주택 - 제2호의 공동주택(주거복합일 경우 제외) -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-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- 제15호의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 - 제16호의 위락시설 -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- 제28호의 장례식장	-	
	권장	1~2층	[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] -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-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일반음식점 -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	-
		전층	[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] -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, 독서실 - 제7호의 판매시설 -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- 제14호의 업무시설	-
공공기여 (공공시설 등 기부채납)		공공기여 제공 비율은 구역면적의 9.5% 이상 (조성 후 기부채납, 상한용적률 내에서 용적률 완화) 공공기여(기반시설) 도로 확폭 (약 9.5%)	- 지침도 참조 - 도로 확보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, 가이드라인 준수	

Ⅲ.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

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1.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-	왕십리 오거리변 특별계획구역	성동구 도선동 39-2	1,652.9	-	1,652.9	-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

1.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1) 도로 결정조서 : 변경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대로	2		30~40	주간선 도로	3,305 (52)	서울 운동장	행당 광장	일반 도로	-	-
변경	대로	2		30~40	주간선 도로	3,305 (52)	서울 운동장	행당 광장	일반 도로	-	선형 변경
기정	소로	2	15	8~10	집산 도로	127	왕십리로	대로 2-58	일반 도로	총고22호 (39.01.19.)	-
변경	소로	2	15	8~10	국지 도로	127	왕십리로	대로 2-58	일반 도로	총고22호 (39.01.19.)	선형 변경

※ 도로 연장에서 ()는 사업대상지 내 연장임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2	대로2	• 선형 변경	• 대로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대로2호선과 소로2-15호선 간 접하는 가각부에 대해 도로폭 현황에 맞추어 선형 조정
소로2-15	소로2-15	• 선형 변경	• 대로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대로2호선과 소로2-15호선 간 접하는 가각부에 대해 도로폭 현황에 맞추어 선형 조정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가.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구분	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
불허 용도		•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[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] • 제1호의 단독주택 • 제2호의 공동주택(주거복합일 경우 제외) •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 •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, 마권전화투표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• 제15호의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 제외) • 제16호의 위락시설 •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• 제28호의 장례식장	• 작동
권장 용도	1~2층	[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] •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•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일반음식점 •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	• 작동
	전층	[건축법시행령 별표1 중] •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, 독서실 • 제7호의 판매시설 •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• 제14호의 업무시설	• 작동

나. 건폐율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도면표시번호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
-	• 60% 이하	• 60% 이하

다. 용적률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도면표시번호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
-	• 기준 / 허용 / 상한 - 800% 이하 / 880% 이하 /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적용	• 상한 1,269.17% 이하

1) 인센티브 운영계획

항목	계획내용	비고
기준용적률	• 800% 이하	-
허용용적률	• 800% 이하	-
상한용적률 인센티브	• 469.17% - 친환경건축물 인증 120% / 관광숙박시설 240% / 공공시설 기부채납 109.17%	-
상한용적률	• 1,269.17% (800% + 469.17%)	-

2)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결정사항

항목	계획내용	인센티브												
친환경건축물 인증	- 허용용적률 + (법적용적률 × 친환경건축물 인증 완화비율) - 800% + (800% × 0.15) = 920% (800% + 120%) ※ZEB 4등급 12% 및 녹색건축 인증 우수 3% 적용	120%												
관광특화	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51조 제2항에 따른 관광숙박특화형 계획기준 적용 - 허용용적률 + (법적용적률 × 0.3 × 계수) = 800% + (800% × 0.3 × 1.0) = 1,040% (800% + 240%) ※객실비율 80% 이상 적용 (계수 1.0 적용)	240%												
공공시설 기부채납	- 공공시설 기부채납 적용 - 허용용적률 × [1 + (1.3 × α토지)] = 800% × [1 + (1.3 × 0.104975)] = 909.17% (800% + 109.17%) ※α토지 = 공공시설 제공면적 / 제공후 면적 = 157.03㎡ / 1,495.87㎡ = 0.104975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면적(㎡)</th><th>구성비(%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지</td><td>1,495.87</td><td>90.5</td></tr> <tr> <td>도로</td><td>157.03</td><td>9.5</td></tr> <tr> <td>합계</td><td>1,652.9</td><td>100.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면적(㎡)	구성비(%)	대지	1,495.87	90.5	도로	157.03	9.5	합계	1,652.9	100.0	109.17%
구분	면적(㎡)	구성비(%)												
대지	1,495.87	90.5												
도로	157.03	9.5												
합계	1,652.9	100.0												

라. 높이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도면표시번호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
-	- 높이제한 100m 이하 ※단,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1.3배 이내 완화 가능	- 높이제한 130m 이하 ※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라 1.3배 완화 적용

마.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도면표시번호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
-	[건축한계선] • 서측 :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• 남측 : 왕십리로변 도로(기부채납)경계선으로부터 3m	[건축한계선] • 서측 :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(차도부속형) • 남측 : 왕십리로변 도로(기부채납)경계선으로부터 3m (보도부속형)
-	[벽면한계선] • 서측 :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(1층)	[벽면한계선] • 서측 :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(1층)

바.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도면표시번호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
-	[동선계획] • 간선도로(왕십리로) 및 도로가각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• 왕십리로 가각부에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	[동선계획] • 간선도로(왕십리로) 및 도로가각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• 지정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

사.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도면표시번호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
-	• 공공기여 제공 비율은 구역면적의 9.5% 이상 (조성 후 기부채납, 상한용적률 내에서 용적률 완화) 공공기여(기반시설) 도로 확폭 (약 9.5%)	• 구역면적의 9.5% 도로 확폭

3.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(종합)

구분		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	세부개발계획
구역명		• 왕십리 오거리변 특별계획구역	• 왕십리 오거리변 특별계획구역
용도지역		• 일반상업지역	• 일반상업지역
구역면적		• 1,652.9㎡	• 1,652.9㎡
가구 및 획지		•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한다.	•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한다.
건폐율		• 60% 이하	• 60% 이하
용적률	기준	• 800% 이하	• 800% 이하
	허용	• 880% 이하	• 800% 이하
	상한	•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적용	• 1,269.17%
높이		• 100m 이하 ※단,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1.3배 이내 완화 가능	• 130m 이하 ※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라 1.3배 완화 적용
건축물 용도		•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준수	•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준수
건축물의 배치	건축 한계선	• 서측 -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• 남측 - 왕십리로변 도로(기부채납) 경계선으로부터 3m	• 서측 -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(차도부속형) • 남측 - 왕십리로변 도로(기부채납) 경계선으로부터 3m (보도부속형)
	벽면 한계선	• 서측 -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(1층)	• 서측 - 왕십리로20길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(1층)
차량 및 보행동선	동선 계획	• 간선도로(왕십리로) 및 도로가각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• 왕십리로 가각부에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	• 간선도로(왕십리로) 및 도로가각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• 지정 위치에 공개공지 설치
공공기여 (공공시설 등 기부채납)		• 공공기여 제공 비율은 구역면적의 9.5% 이상 (조성 후 기부채납, 상한용적률 내에서 용적률 완화)	• 공공기여 제공 비율은 구역면적의 9.5% 이상 (조성 후 기부채납, 상한용적률 내에서 용적률 완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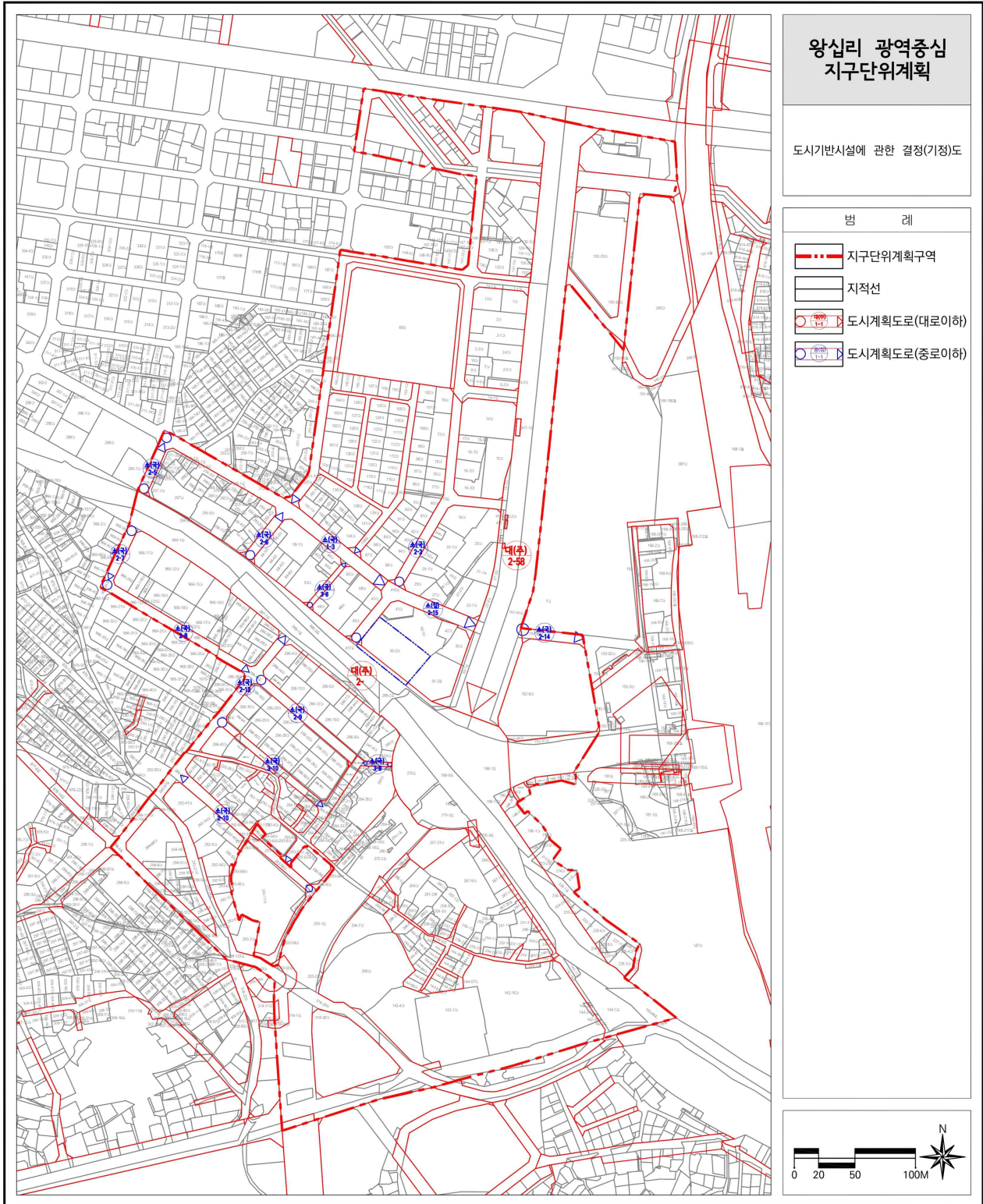
Ⅳ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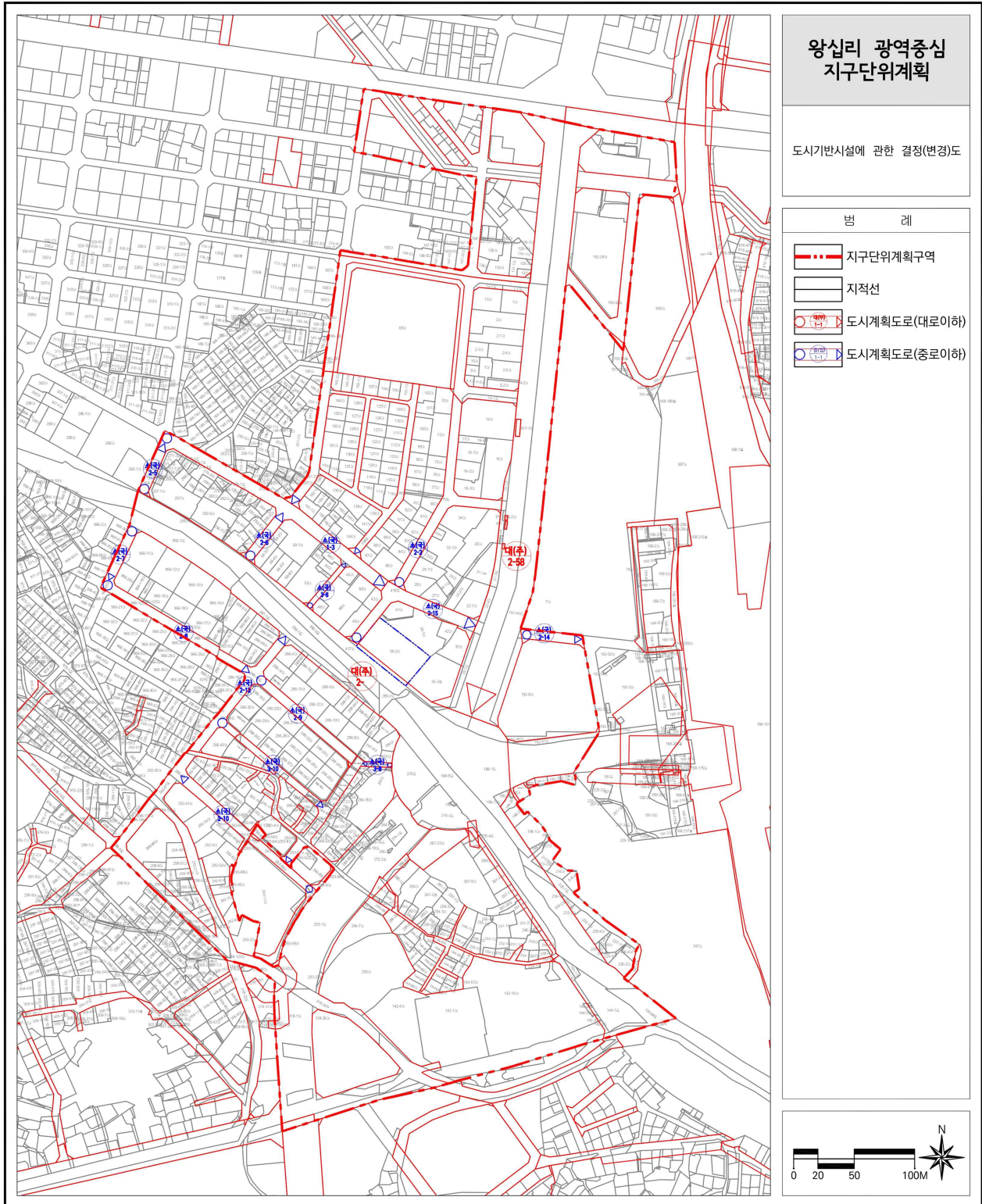
Ⅴ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02-2133-8380)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(02-2286-5560)에
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
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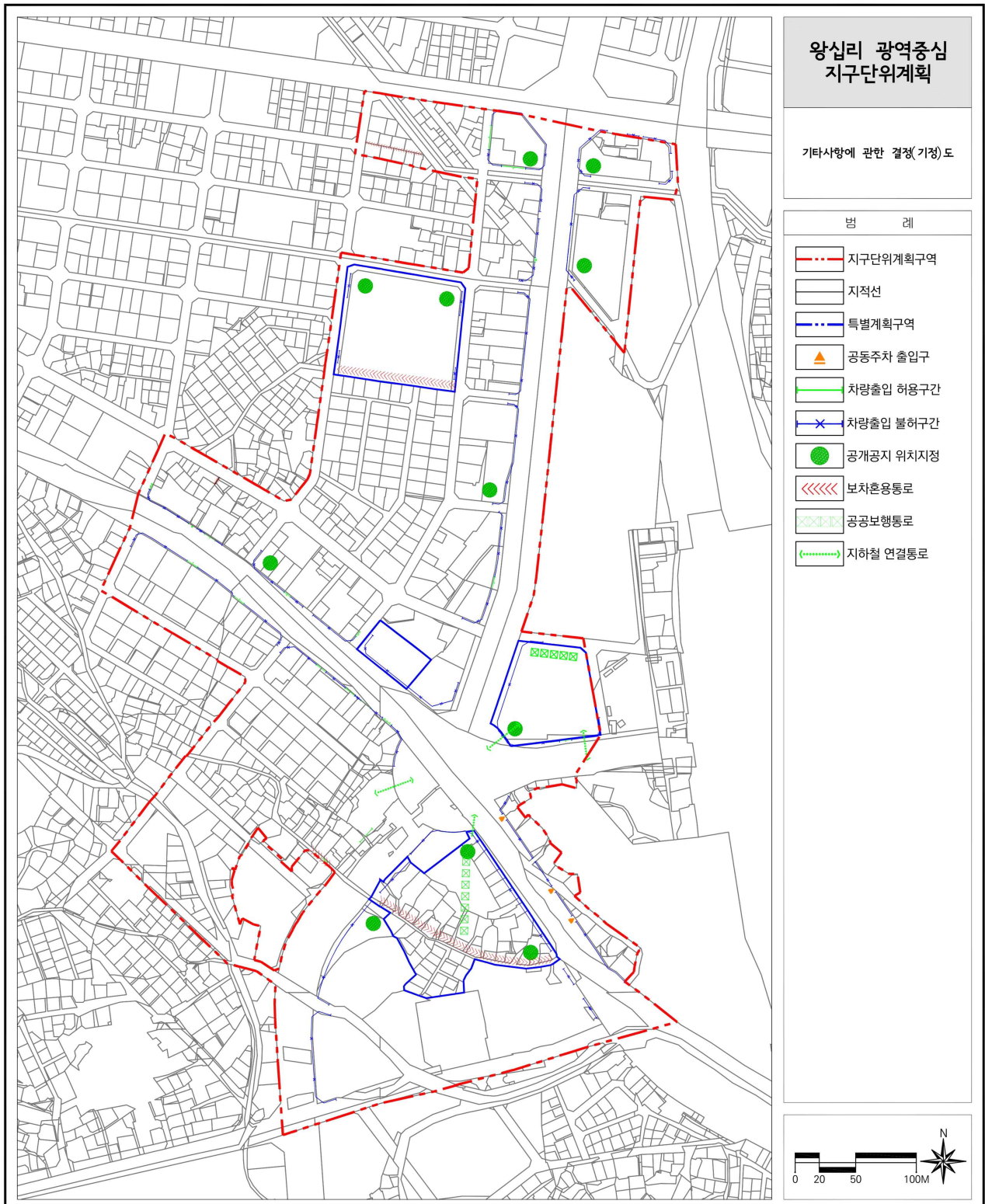
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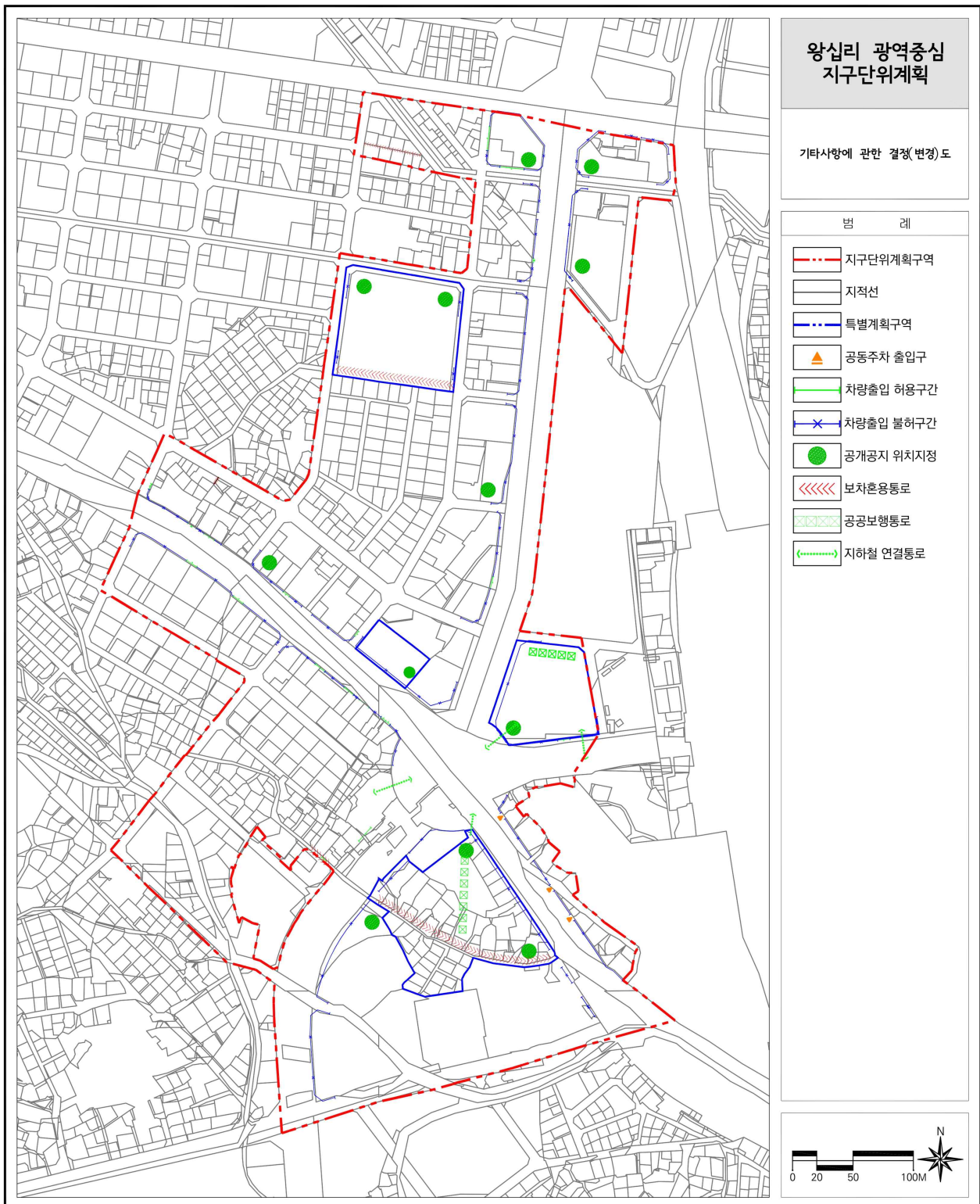
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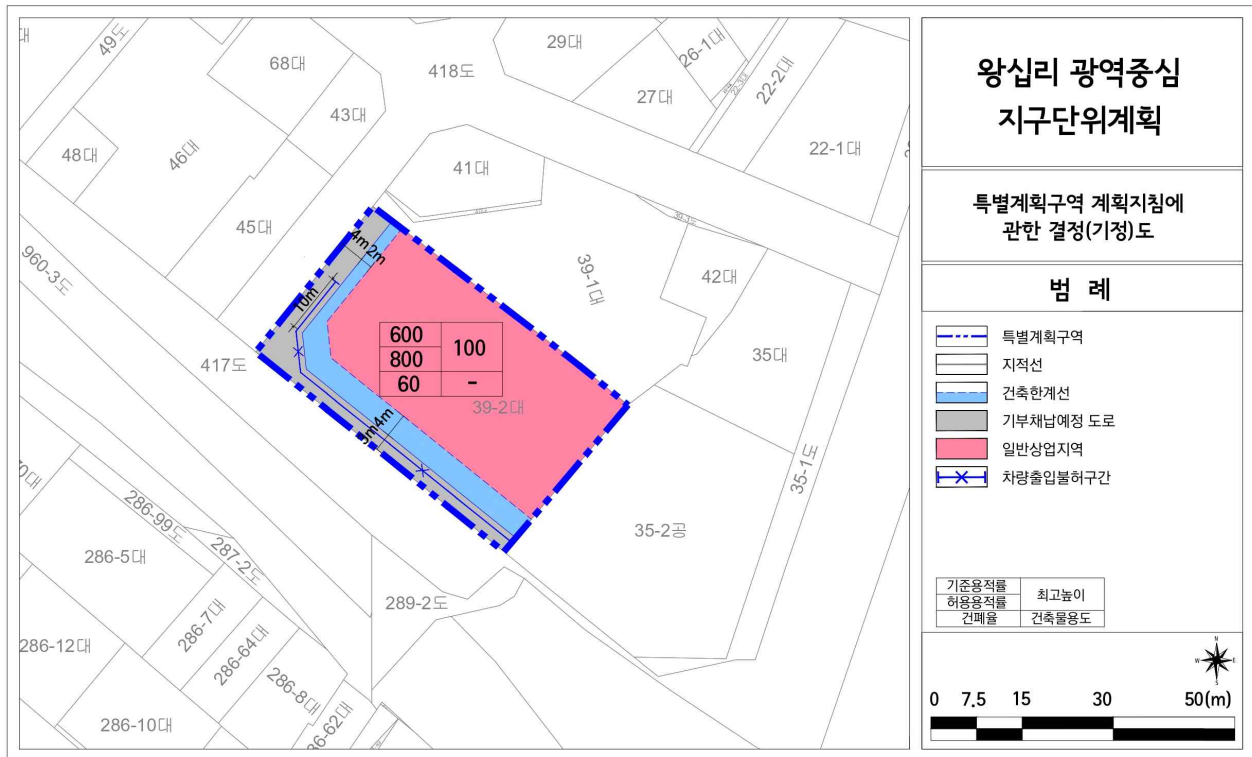
■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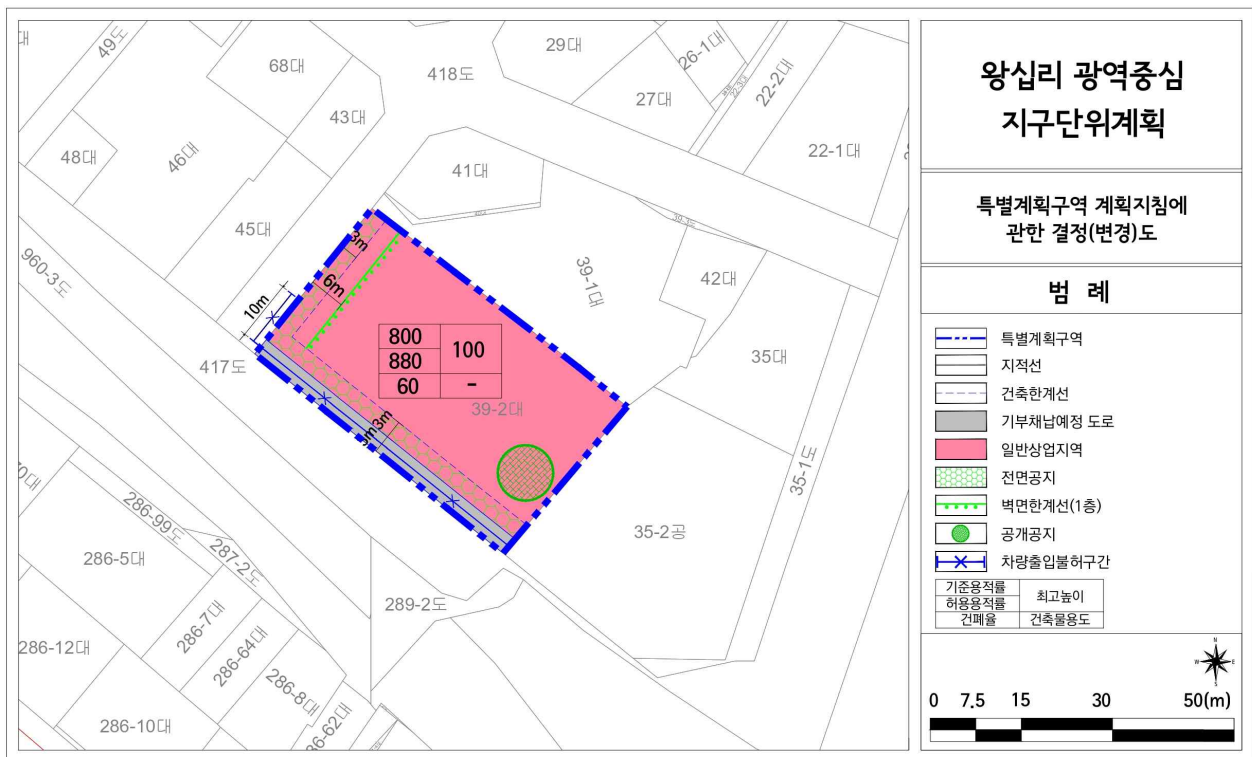
■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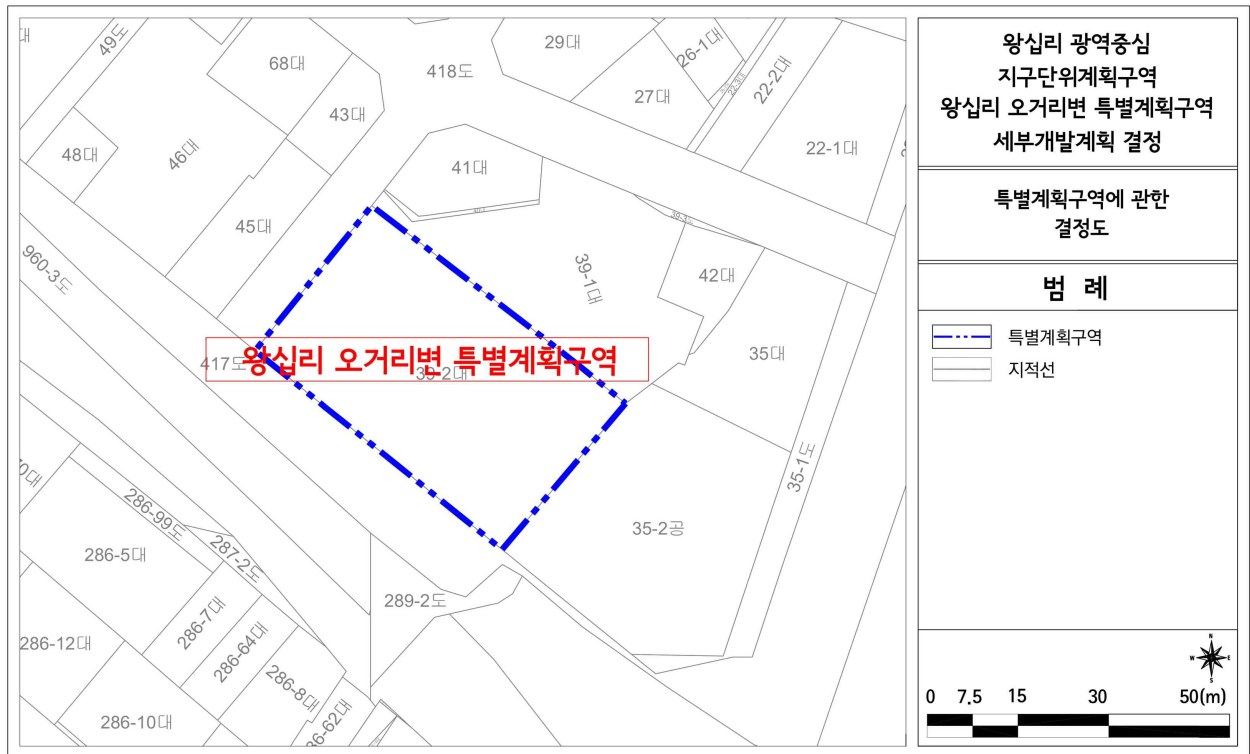
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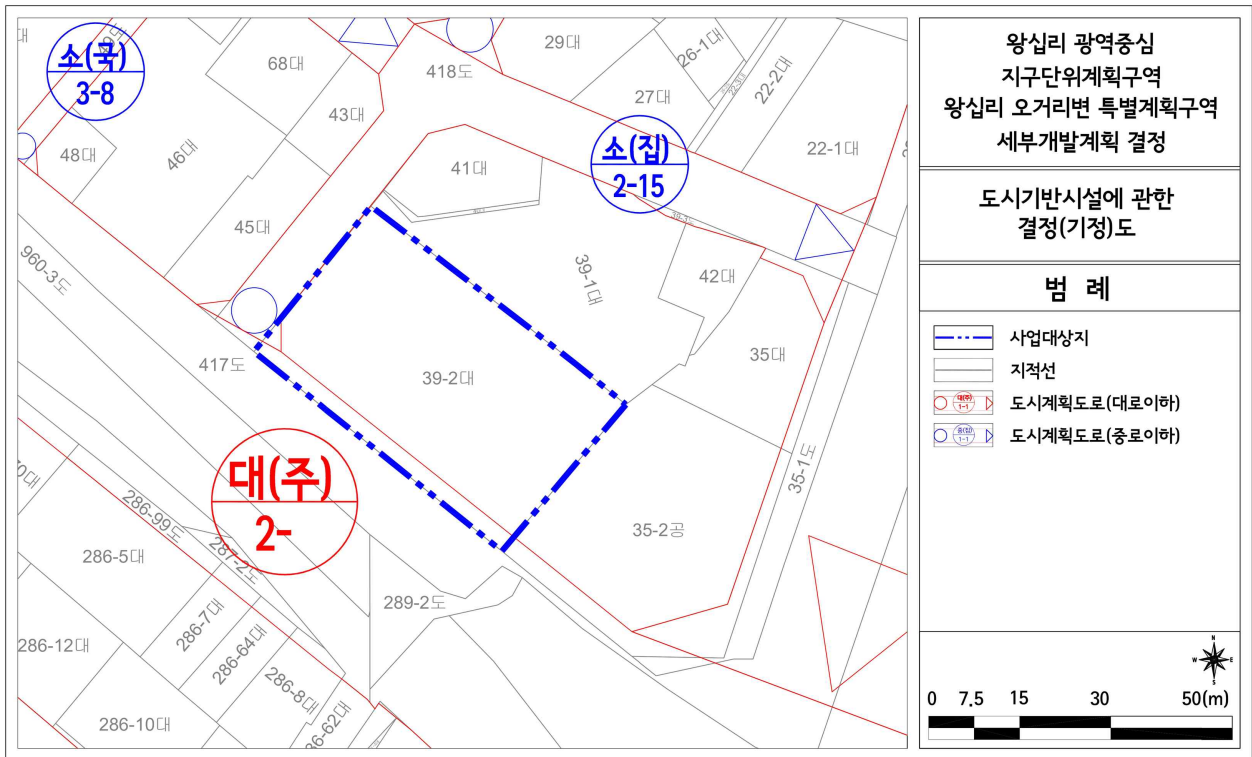
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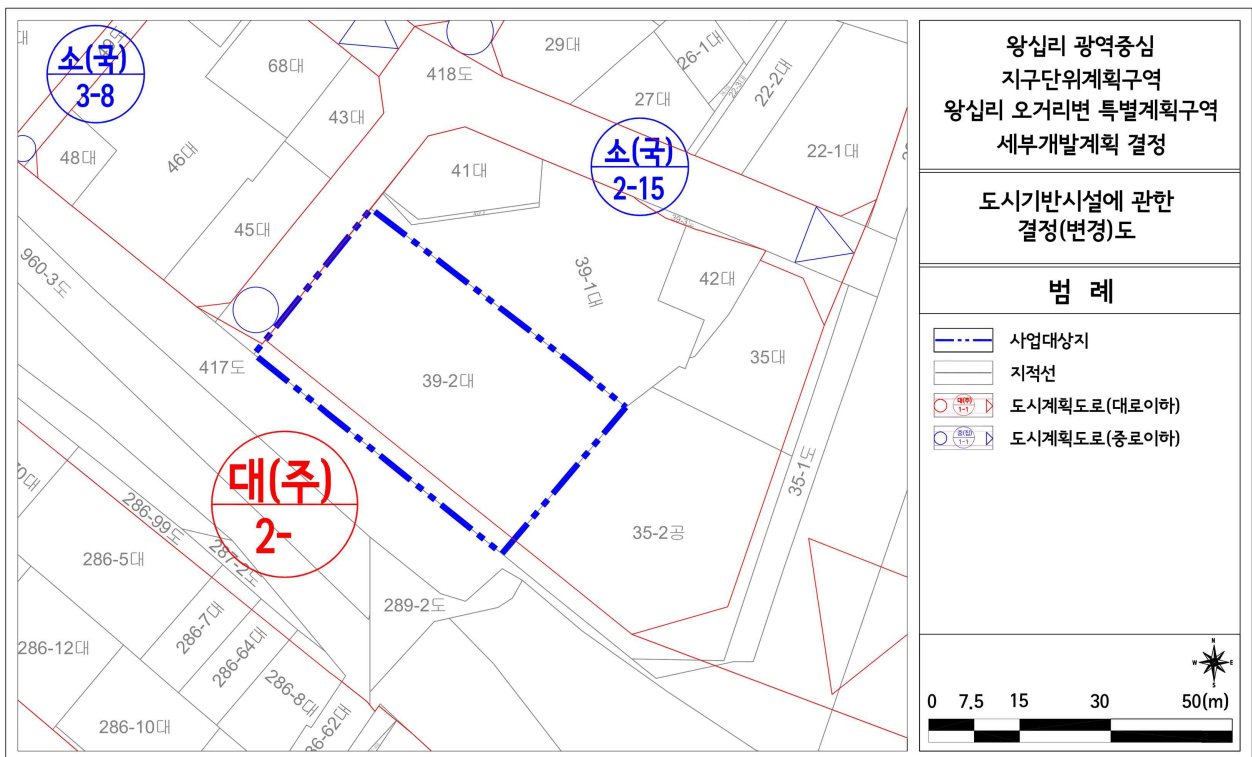
■ [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-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



■ [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-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[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-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■ [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-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

